



목적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날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영아를 둔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64,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기준표(2020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인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7인	5,912,000	198,402	207,077	201,381
8인	6,618,000	224,298	238,415	228,710
9인	7,325,000	248,116	267,395	253,956
10인	8,032,000	268,311	289,976	276,84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해당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월86,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 지원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부(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확인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조제분유 신청서 : 산모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확인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

방문보건팀 061-470-6538

